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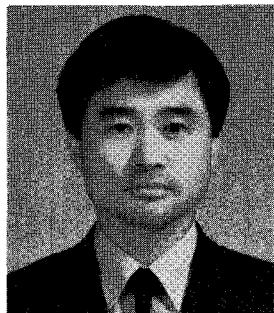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나 동강 수질오염 사태로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은 UR에 이어 환경부문에 새로운 무역규제 및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들의 GR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때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사업장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후퇴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마저도 포기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는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하루속히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을 짧게하여 신속하게 민원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수질환경 보전 법 개정안중 사업장 폐수종별기준을 현행 「시설용량」에서 「용수사용량」으로 기준을 바꿔 산정한 것은 현실적 감각에 일치되는 조항이나 종별 환경관리인 선임문제는 좀더 강화를 하던지 현행대로 종



李相鎬
(본연합회 회장)

속시키던지 해야 할 것이다.

1종·2종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환경기사 1급·2급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3종 및 4·5종 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환경기사 1급 또는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환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으로 환경을 후퇴시키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를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경력자를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 의존해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임할 텐데 이는 타업무에 종사한 자를 환경업무 종사자로 허위 기

재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과 3종 사업장도 환경기사 2급으로 환원조치해야만이 환경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국가에서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수백명의 환경기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이중 50% 만이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종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기술능력을 함양시켜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에 관한 한 행정규제는 완화해서 간소화시키되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영구히 보존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환경보호 입법과는 별도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표준화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업장의 전문기술인력을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환원조치해야 할 것이다.